

1. 개정이유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등을 비치할 때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증서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안 제33조의3)

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제7호)

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고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면제(안 제54조제1항제6호)

라. 어선검사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여 증서발급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안 제63조제3항)

마. 수산업·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4조

제2항제11호)

- 바. 어선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때부터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안 제69조의7제3항)
- 사. 현행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안 [별표16] 제3호바목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의 완료, 입법예고 예정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선박국적증서등의 전자적 비치허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국적
증서등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물 안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어선형 도면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및 제
한하중 등 확인증은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자증서의 발급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에 따른다.

제64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산업·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법」 제2조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송 촬영, 신문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제69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31조의9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3호바목1) 중 “5톤”을 “10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	<u>제33조의3(선박국적증서등의 전자적 비치허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등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u>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수산물 안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

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 10. (생략)

<신설>

③ (생략)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② (생략)

<신설>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수산업·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법」 제2조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송
촬영, 신문의 발행 등을 목적
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31조의9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 제9조

	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